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월요일 기준

목적

본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 및 종교 기반 기관의 운영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Religious and Funeral Services and Operations of Faith-Based institution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 19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 및 종교 기반 기관 운영에 대한 임시 지침"은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의 신앙 지도자 및 관계자, 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 및 참석자들에게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가 재개되거나 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매장과 하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종교 및 장례식 모임에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일 뿐이며, 기관이나 운영자가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발표 당시의 가장 잘 알려진 공중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자주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예배 및 장례식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배경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0년 3월 7일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 호를 발령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2020년 4월 15일에 행정명령 202.17 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만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 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가 안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재량을 승인하는 행정명령 202.34 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 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자료 수집 노력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에 Cuomo 주지사는 재개 3 단계가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6월 1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표준 외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지침 및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 표준

다음과 같은 최소 국가 표준 및 해당 연방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예배 또는 장례식 서비스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예배 및 장례식 서비스의 회중/참석자를 다음으로 제한해야 하도록 보장합니다.
 - 재개 1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 또는 실외에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를 10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재개 2 단계 및 3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점유 허가에서 설정된 특정 구역의 최대 점유 인원의 25% 이하로 제한 또는 실외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25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재개 4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점유 허가에서 설정된 특정 구역의 최대 점유 인원의 33% 이하로 제한 또는 실외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50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별도의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재개 1 단계에서는 10명씩의 그룹을 동시에 각 별도의 건물에 둘 수 있고, 재개 2 단계 및 3 단계에서는 각 건물 최대 점유 인원의 25%를 동시에 각 별도의 건물에 둘 수 있으며, 재개 4 단계에서는 각 건물 최대 점유 인원의 33%를 동시에 각 별도의 건물에 둘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들이 별도의 지정된 입구 및 출구가 있으며 그룹들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핵심 활동의 안전상 더 가까운 거리(예: 관 이동)를 요구하거나 개인이 같은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한 항상 모든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래 활동은 추가 보호 조치에 따라 개인 간에 12피트 이상의 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직원, 자원봉사자 및/또는 참석자가 다른 사람의 6 피트 이내(또는 노래 중인 경우 12 피트)에 들어갈 때, 같은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한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원, 자원봉사자 및/또는 참석자는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이 6 피트 이내에 오면(예: 좌석에 걸어들 때)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기반 안면 가리개와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자원봉사자 및 참석자가 모든 방향(예: 좌우, 열 내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에서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도록 스테이션(예: 연단) 및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 및/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개인이 같은 가정에 속하지 않는 한 사용 사이에 청소 및 소독 없이 스테이션이나 좌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예: 가정 구성원은 다른 가정 구성원 외 사람들과 6 피트 떨어진 한 좌석에 함께 앉을 수 있음). 스테이션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예: 사운드 부스)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를 공급하고 사용을 요구 및/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안면 가리개를 대신하여 플라스틱 차폐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차량, 엘리베이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개인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탑승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또는 차량 최대 수용량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절차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와의 환기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예: 창문 및 문 열기).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회중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테이프 또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 등으로 좁은 통로, 복도, 좌석 또는 공간에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또는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이 모이는 구역(예: 화장실, 입구, 건강 선별 스테이션 등)에 6 피트의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 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한다는 전체 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개인에게 다음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 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 서비스 또는 기도 중에 서로 다른 가정 구성원의 손을 잡거나 악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예: 리허설, 회중 모임)을 다음 파라미터 내로 제한해야 하며,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사업체 및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코로나 19)에 대한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할 때마다 동영상, 화상회의, 드라이브인 서비스 등의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개 1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 또는 실외에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를 10 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재개 2 단계 및 3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점유 허가에서 설정된 특정 구역의 최대 점유 인원의 25% 이하로 제한 또는 실외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25 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재개 4 단계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점유 허가에서 설정된 특정 구역의 최대 점유 인원의 33% 이하로 제한 또는 실외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50 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량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 교대근무 시작/중지) 시 사회적 거리두기(예: 6 피트 공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일정을 교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C. 모임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회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필요한 직원/자원봉사자만 직접 현장에 있도록 제한
 - 가능한 경우 야외에서 서비스 개최(예: 종교 모임을 위한 야외 서비스 또는 무덤 옆에서만 진행되는 장례식)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한 현장 참석자 감소
 - 원격 서비스 옵션 제공(예: 라이브 스트리밍, AM/FM 방송)
 - 드라이브인 서비스 허용
 - 참석자가 도착한 차량 안에 계속 있도록 합니다.
 - 참석자는 다른 차량에 있는 성직자, 직원 또는 참석자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 차량 안에는 한 가정의 구성원만 있어야 합니다.
 - 차량은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거나 주차 공간을 하나씩 띄어 사용해야 합니다.
 - 취약 인구(예: 만 70 세 이상,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적이 저하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시간을 포함하여 서비스 시간을 다양하게 제공
 - 수용량 관리를 위해 개정된 참가 신청을 장려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활동을 그렇지 않는 활동보다 우선합니다.
 - 예정된 활동을 교대로 배치하고 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 및/또는 팀이 일하는 경우를 피하고 점유 지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사용하십시오.
 -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가구 구성원 간에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포함하는 관행을 변경하거나 없앱니다.

- 지역 이동 간 자동차 또는 리무진 차량 공유
- 행사 또는 서비스 전, 도중 또는 후에 참석자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간에 최소한 12 피트 떨어져 있도록 하거나 추가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 장벽으로 호흡 비말의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래와 관련된 활동(예: 합창, 독주, 선창, 음악 앙상블)을 제한합니다.

D. 이동 및 운영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상호 작용(예: 구내를 떠나는 개인에 대한 출구 및 들어오는 개인에 대한 별도의 입구 지정) 및 이동(예: 개인은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의 스테이션 또는 좌석 근처에 머물러야 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II. 장소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해야 하며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해야 하거나 방문자 또는 참석자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안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참석자가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질환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배되거나 참석자가 만 2 세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고 앉아있는 동안은 제외되며, 직계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6 피트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앙 지도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또는 참석자는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 피트 내에 오면 안면 가리개를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예: 좌석에 걸어갈 때).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 안면 가리개 및 기타 유형의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청소 지침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예배 또는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그러한 참석자가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라 직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또는 참석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경전, 현금 접시 및 기타 물체와 같은 물건의 공유뿐만 아니라 좌석, 악기, 문 및 난간 등의 공유 표면을 만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공유 물체 또는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원, 자원봉사자 및 참석자가 접촉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하도록 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가운 또는 기타 의류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 사이에 세탁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체의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거리두기 절차를 시행하며 기부 접시/상자를 중앙 위치에 놓습니다.
 - 좌석 또는 벤치에서 경전을 없애고 회중이 자신의 것을 가져오도록 권고하십시오.
 - 합창단/음악 앙상블이 강화된 거리두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원들이 집에서 가운을 세탁하고 가능한 경우 자신의 악기를 지참하도록 권장하십시오.
 -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이 필요한 특정 종교적 관행을 조정 및/또한
 - 성수반 또는 다른 공유하는 물 관련 서비스 또는 의식 활동을 없애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전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보호 장비를 적절히 쓰고, 벗고, 청소(해당하는 경우)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청소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적절히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의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용: 비누, 흐르는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소독제의 경우: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손 소독제는 모든 참석자나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 전체에 배치해야 합니다. 입구/출구와 같은 편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손 세정제 스테이션 근처에 놓습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더러워진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시설 주변에 쓰레기통을 놓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 사용 후에도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참가자가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지역 또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각 서비스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량을 줄임으로써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서비스 사이클을 포함하여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공유 물체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것으로 뉴욕주에 등록되고 환경보호국이 확인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청소 또는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물품(예: 종교 유물)이 손상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배치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공급 및/또는 그러한 물품을 접촉하는 개인의 수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 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출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시 최소한 모든 통행량이 많은 지역 및 고접촉 표면(예: 좌석, 경전, 현금 접시, 난간, 문 및 다른 물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은 코로나 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자 발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환자가 사용한 영역을 폐쇄합니다.
 -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반드시 운영을 폐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 청소 또는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24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와 같이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구역을 적절하게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열 수 있습니다.
 - 환자와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이 없는 사람은 소독 직후 해당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밀접 또는 근접" 접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직원을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하십시오.
 - 환자가 방문하거나 시설을 이용한 후 7 일을 초과하여 지났을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장례식 관련 서비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로 확인되거나 의심되어 사망한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장례식 지침"(Funeral Guidan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을 따릅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음식 및 음료(예: 뷔페 스타일 식사)를 금지해야 합니다.

D.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변경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첫 재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수, 시간 및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가 발행한 산업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자원봉사자, 참석자를 위해 적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판 및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페이지, 문자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II. 절차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 신앙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선별 관행을 시행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가 참석자를 위해 선택적인 건강 선별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선별 관행은 사람이 건물에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수행(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별이 완료되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선별은 그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알고서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인 자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함.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및/또는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이 있었음.
- 코로나 19 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또한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직원의 일일 온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인의 건강 자료(예: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또는 현장에 진입하는 방문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절차에 익숙한 개인에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고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모임 장소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진단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과 함께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검사 결과가 코로나 19 양성이며 영향을 받은 해당 사람이 그렇게 통보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 19 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 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모든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는 개인이 후에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모임 장소 또는 구역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일지를 유지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해 또는 비접촉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달은 제외합니다. 일지에는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참석자가 코로나 19 로 진단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일지는 참석자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참석자가 건강 스크린을 작성하거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없지만, 참석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기록하고 접촉 추적을 위해 연락받을 수 있도록 참석자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직원 또는 신앙 지도자가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직원 또는 신앙 지도자가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직장의 모든 접촉을 추적하고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인 시점(둘 중 더 이른 시점) 전 48 시간 이내에 현장에 입장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를 주 및 지방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및 주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 19 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또는 근접한 접촉을 했다고 경고받고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 시점에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V. 운영자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데 지침이 되는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신앙 기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